

제 1289 호
1986.6.12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보관
편집인 : 공보관리담당관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2087 호 :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중 개정조례	2
제 2088 호 : 서울특별시 시험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	5
제 2089 호 : 서울특별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	6
제 2090 호 : 서울특별시 립운등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	6

◎ 사 령

연																				
월									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표창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
다.

1986.6.12.

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㉑

㉑ **서울특별시조례제 2087 호**

서울특별시표창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 1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1 조 (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
성) ①서울특별시 본청 및 구청이
다음 각호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.

1. 본청에 국무총리표창이상 훈격의
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및 모범공무
원규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모
범공무원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
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제 1 공
적심사위원회를 둔다.

2. 본청에 시장표창대상자 및 장관
급상당' 표창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
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제 2 공적
심사위원회를 둔다.

3. 구청 (보건소를 포함한다)에 구
청장 표창이상의 추천대상자의 공

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청공적심사
위원회를 둔다.

②제 1 항 각호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
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서울특별시 제 1 공적심사위원회의
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위원은
5인이상 10인이내로 하되,본청 국
장급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

2. 서울특별시 제 2 공적심사위원회의
위원장은 내무국장으로 하고, 위원은
5인이상 10인이내로 하되,본청 과
장급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3. 구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
부청장으로 하고, 위원은 5인이상
10인이내로 구성하되, 구청의 국장
또는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
임명한다.

③제 1 항 각호의 공적심사위원회 (이하
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이 사
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
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
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
행할 수 있다.

[별지 제 5 호 서식]을 별지와 같이
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 5 호서식)

공 적 조 서

* 전산처리함으로 해당코드 (상훈 사무실무지침 참조)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십시오.

1)성 명				학 자			
2)주 민 등록번호 (생년월일)				성	성	성	성
4)분 직 (국적)							
5)주 소							
6) 직	업	(7) 소					
(8) 직	위	(9) 등	급 (직급, 직급)	(10)			
(11) 공적요지 (50자 내외)	(12) 공적 분야코드						
(13) 추천 후격				(14) 추천순위			
조 사 자							
(15)소속				(16) 직 위			
(17)직급				(18) 성 명			
위의 기록이 불립 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
년 월 일							
추천관	직 위	성 명	직 인				
1202-2(2-1)일(1)				190mm×268mm			
584.1.26 승인				신공공기 549/의			

<u>주요 학 력 및 경 력</u>			
(19) 년 월 일	(20) 이 력	(21) 년 월 일	(22) 이 력
과거 포상기록 (훈장·포장·표창별기 기록)			
(23) 년 월 일	(24) 내 용	(25) 년 월 일	(26) 내 용
(27) 공 적 사 항			
* 공적 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.			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6. 6. 12

서울특별시장 염보원 (인)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2083 호
서울특별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과
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(수당지급
기준)중 별표를 별기와 같이 한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1)

시 험 수 당 지 급 기 준 표

(단위: 원)

수 당 별	구	분	수 당 액	비
총계수당	객 관 식	1 과목(20 분) 당 1 위원	30,000	
		주 관 식	1 과목당 1 위원	30,000
채점수당	주 관 식	5 부까지 기본료	10,000	
		10 부까지 기본료	20,000	
		10 부 초과 1 부당	500	
면접 및 실기수당	5 급 이상 (일 당)	10 명까지 기본료	30,000	상 한 50,000
		10 명초과 1 인당	1,000	
	6 급 이하 (일 당)	10 명까지 기본료	10,000	상 한 50,000
		10 명초과 1 인당	500	
문제심사 위원수당	1 인 1 일		10,000	
감시수당	공휴일 및 경일 공히지급		5,000	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
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6. 6.12

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2089 호

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
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
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3조 (징계) ①임용권자는 고용직
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

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때에
는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
결을 요구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징
계 의결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
한다.

②고용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
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

(별표 1)

기본전용사용료 (평일주간 기준)

(단위: 원)

운 동 장 별	체 육 경 기	체 육 이 의 행 사
종합운동장	44,000	260,000
실 내		
09:00-18:00	464,000	928,000
09:00-12:00	154,000	308,000
수역장	392,000	784,000

일반적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
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립 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
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6. 6.12

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2090 호

서울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
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
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조 (사용료의 금액 및 선납) 제 1
항중 별표 1, 별표 2, 별표 4를 별지와
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운 동 장 별		체 육 경 기	체육이외 행사
	야 구 장	80,000	300,000
	올림픽 주경기장	165,000	660,000
장 총 체 육 관		26,000	170,000
서울 운동 장	육 상 장	55,000	180,000
	야 구 장	30,000	180,000
	배 구 장	8,000	40,000
	경 구 장	8,000	62,000
	수 영 장	65,000	70,000
	아 동 수 영 장	15,000	20,000
	역 도 장	8,000	40,000
효 상 운 동 장	축 구 장	24,000	140,000
	정 구 장	면당 4,000 기준	
	(A - 1 코 트)	20,000	45,000
	(A - 2 코 트)	16,000	40,000
	(A - 3 코 트)	16,000	40,000
	(B - 1 코 트)	8,000	24,000
매 능 체 육 공 원	축 구 장	20,000	80,000
	정 구 장	16,000	44,000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토, 일 공휴일은 평일의 3 할가산, 야간사용은 해당 주간 사용료에 3 할 가산함 ○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 할, 야간은 사용료의 2 할 가산하고 1 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간주함 ○ 종합운동장내 실내수영장의 동절기(11 월 - 익년 4 월까지)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 할을 가산하고 다이빙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3 할을 가산함. ○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의 보조경기장 사용료는 1 실당 실내체육관 기본 사용료의 2.5 할을 징수함. ○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보조경기장 사용료는 주경기장 기본사용료의 3 할 징수 		

(별표 2)

개인연습사용료(평일 2시간 기준)

(단위: 원)

운 동 장 별	요 금	비 고	
종합운동장	실내체육관	2,400	월회원은트레닝 센터사용 무료
	실내수영장(대 인)	1,100	
	" (소 인)	850	
	야 구 장	2,400	
	주 경 기 장	2,400	
	주경기장 트랙	200	
	트레닝 센터	500	
총 계	1,200		
서울운동장	육 상 장	100	
	축 구 장	1,200	
	야 구 장	1,200	
	배 구 장(1코트당)	1,200	
	정 구 장(1면당)	1,800	
	탁 구 장(1대당)	500	
	수 영 장	250	
	역 도 장	300	
트레닝 센터	250		
호구	축 구 장	650	
	육 상 장	100	
참장	정 구 장(1면당)	1,800	
태극농공체원	축 구 장	700	
	육 상 장	100	
	정 구 장(1면당)	5,500	
비 고	○ 소인(13세이하)의 연습사용료는 해당기본료의 5할정수(단, 수영장 제외) ○ 단체는 동일 소속팀 10명 이상으로하고 기본료의 7할을 정수함.		

운 동 장 별		요 금	비 고
비 고	○ 월 회원 사용료 발생시는 징수	기본료에 20 일을	월은 금액으로
	○ 토, 일 공휴일은 평일의	3일 가산	
(별표 4) 상 행 위 사 용 료			
구 분		요 금	
영 화	종합운동장	주 간	120,000
		야 간	180,000
환 영	동대문, 장충 요청, 태능	주 간	60,000
		야 간	90,000
선 전 물 (부착광고물 1m×10m이내) (진열, 전담 1㎡당)		매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함	
프로그램, 선전책자 판매 (판매부수×1부당 가격)		판매액의 20%	
기타 물품 판매 대역 (매출금액×원가)×판매수량		실 판매이익의 20%	
사 령			
© 1986년 6월 9일자			장 직 210호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위
김 진 철	충청남도 천안시 건축을 명함.	종로구 배화동	지방행정서기보

◎ 1986 년 6 월 12 일 자 명제 271 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이교희	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호, 제 2호의 규정에 의거 "전채"에 처함.	정신병원	지방행정주사
박정	불문(경고) (서울특별시보통징계위원회의결사함)	동대문구	행정주사
서재풍	" "	공무원교육원	"
안기환	" "	용산구	행정주사보

명제 274 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위	직급
전주영	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호, 제 2호의 규정에 의거 "전채"에 처함.	용산구	청소과장	지방행정사무관
김기동	불문(경고) (서울특별시 제 1인사위원회 의결사함)	시정개발 담당관	시정연구 제장	"

서울특별시